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관련 법정형 강화 등〉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48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0174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음주·약물 범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 (안 제41조 및 제82조)	2
2. 음주·약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8
※ 참고자료	16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제2201748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철도종사자가 음주·약물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철도운영자가 알게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과, ② 음주·약물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약물 관련 죄의 재범자들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등 음주·약물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음주·약물 범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 (안 제41조 및 제82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41조제1항은 운전업무종사자 등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의무가 부여된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철도운영자가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철도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또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은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신 설> ④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현행	개정안
7의2. ~ 7의4. (생략)	<u>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u> 7의3. ~ 7의5. (현행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와 같음)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신고의무 도입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종사자의 음주 관련 문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의결된 바 있음.

【202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철도종사자 음주 관련 내용】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경우 미신고시 처벌이 곤란하며, 처벌 형량도 他 분야(도로 등)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할 것

(한국철도공사) 음주 관련 행위 및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인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제기된 주된 이유는 코레일 직원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행법 제41조제1항(음주제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13명

중 코레일이 자체 적발한 11명과 철도경찰에게 적발된 2명에 대한 처벌이 상이했다는 점이었음. 철도경찰에게 적발된 2명은 징계를 받고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코레일이 자체 적발한 11명은 징계 처분만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임¹⁾.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²⁾

【음주측정 적발 및 징계 현황】

현황 \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적발 및 징계(건)	8	10	5	3	2	28
근무 전	4	10	0	0	0	14
근무 중	4	0	5	3	2	14*
형사절차 진행	0	—	0	1	1	2
징계처분만 진행	4	—	5	2	1*	12*

* 2022년 1건의 경우 근무중 적발된 것은 맞으나 음주 수치가 0.01%로 위법사항은 아니었으므로 징계처분만 진행함. 따라서 2018년~2022년 중 제41조제1항 위반 인원은 근무 중 적발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13명임.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철도운영자가 자체 적발한 자와 철도경찰이 자체 적발한 자가 달리 처벌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운영사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사실을 적발하더라

1) [단독]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 SBS 뉴스, 2023.10.1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79098&plink=ORI&cooper=N 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검색일 2024.8.11.)

2)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자료, 2023.10.12.

도 신고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인지·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철도운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음주·약물 제한 규제에서 철도종사자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보이는 「항공안전법」상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개정안과 같은 규율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항공사업자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2)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제한 의무 위반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이는 신고의무 도입에 따라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도 동의하는 입장임.

과태료 수준의 경우 현행법상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사유로 ① 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②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는데, 신설하려는 신고 의무도 상기 사유와 유사하게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으로서 과태료 수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2. 음주·약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① <u>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u>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3. (생략) <u>3의4. (생략)</u> <u>4. (생략)</u> <u>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u> 6.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u> 2. <u>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u> ②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4. (현행 제3호의4와 같음)</u> <u>5. (현행 제4호와 같음)</u>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 14. (생략)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 19. (생략) ④·⑤ (생략) 제80조(형의 가중) ① (생략) ② <u>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u>	1. ~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 1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80조(형의 가중)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제15호의 죄를 지은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u> 2. <u>제79조제1항제2호,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지어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양벌규정) ----- ----- ----- ----- <u>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항제16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u>----- <u>제79조제1항제1호, 제3항제15호 또</u>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제17호----- ----- ----- ----- -----. ----- ----- -----.

현행법에 따를 때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관련 범죄는 ① 음주·약물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제41조제1항 위반, 제79조제2항제5호, ② 음주·약물 관련 확인·검사를 거부한 경우(제42조제2항 위반, 제79조제3항제15호)로 구분됨.

개정안은 두 유형의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법정형 수준, 형의 가중 여부, 양벌규정 포함 여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유형 ① 에 대해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형의 가중** 측면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가중 사유를 신설하며, **양벌규정** 측면에서는 종전과 차이가 없음(양벌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유형 ②에 대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대로이나, **형의 가중** 측면에서 유형 ①과 동일하게 가중 사유를 신설하며, 양벌 규정 측면에서 종전에는 양벌규정 미포함 범죄였으나 **양벌규정** 대상 범죄로 포함시킴.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개정안에 따른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형사처벌 강화 내용】

구 분	법정형	형의 가중	양벌규정
음주·약물 중 업무	3년 ↓ 징역, 3천만원 ↓ 벌금 → 5년 ↓ 징역, 5천만원 ↓ 벌금	X → O (10년 이내 재범)	O 유지 (단, 벌금수준 상향)
검사 불응	2년 ↓ 징역, 2천만원 ↓ 벌금 유지	X → O (10년 이내 재범)	X → O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약물을 한 철도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양벌규정의 경우 철도종사자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고속철도의 경우 1회 운행 시 약 1,000여명을 운송하여 철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형사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항공안전법」,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과 같은 유사 입법례를 통한 처벌 수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³⁾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규제 체계가 「철도안전법」과 가장 유사한 「항공안전법」의 경우 음주·약물 상황에서 업무에 종사한 자 및 측정 불응에 대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의 가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음주·약물 관련 범죄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등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통적으로 규율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른데 최대 수준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측정 불응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개정안과 유사하게 음주운전과 측정불응 범죄에 대해 통합적으로 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대 처벌 수준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그리고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 범죄에 대해 모두 양벌규정이 적용됨.⁴⁾

3) 각 법률별 음주·약물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은 참고자료 1 참조

4)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의 처벌 체계가 상이한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체계가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서술함.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 약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모두 양벌규정에 적용되고, 재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별도 규율이 없음.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경우 「도로교통법」과 유사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른데, 최대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측정불응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의 가중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음주운항 재범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측정불응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⁵⁾ 그리고 음주운항 및 측정불응 범죄 모두 양벌규정이 적용됨.

각 입법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각 운송수단마다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며, 이는 운송수단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에 비해서는 처벌 수준이 높고,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과 비교할 때에는 최고 형량은 높으나 최저 형량이 규율되어 있지는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5) 형의 가중 규정에서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차이가 있음. 「도로교통법」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범죄 횟수 산정 시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을 통합적으로 보는 한편(1회 음주운전 → 2회 음주운전 뿐 아니라 1회 음주운전 → 1회 측정불응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가중 규정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은 음주운항 재범과 측정불응 재범을 별도로 규율함(1회 음주운항 → 1회 측정불응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범으로 가중되지 않음).

【 운송수단 관련 법률 간 음주 관련 범죄 처벌수준 비교 】

구 분		법정형(최대)	형의 가중(최대)	양벌규정
철도	음주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X	O
	측정불응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X	X
개정안	음주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1/2 가중	O
	측정불응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1/2 가중	O
항공	음주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X	X
	측정불응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X	X
도로	음주	2년~5년 징역,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년~6년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O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500만원~2천만원 벌금	1년~6년 징역, 500만원~3천만원 벌금	O
해상	음주	2년~5년 징역, 2천만원~3천만원 벌금	2년~6년 징역, 2천만원~4천만원 벌금	O
	측정불응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2년~6년 징역, 2천만원~4천만원 벌금	O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처벌의 강화 필요성, 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형사처벌 마련 필요성, 철도·항공·해상·도로에서의 음주·약물 관련 처벌 수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형사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75

○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제113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